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: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,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인 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,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삭제
- 나.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기준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,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
- 다. 서식이 유사한 별표 1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표 1로 일원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